김소희 노무사 **「가벼운 객관식 사회보험법」**

초판 사용자를 위한 정오표 (2025-04-14)

P.12 17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 〈기존〉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수정〉		
고용보험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P.13 18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		
〈기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수정〉		
고용보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P.13 19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		
〈기존〉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된다.	()
〈수정〉		
지구 87 <mark>고용보험위원회의</mark>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된다.	()
P.13 20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		
〈기존〉 심의사항에는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
〈수정〉		
고용보험위원회 심의사항에는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
P.13 21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		
〈기존〉 위촉위원 중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수정〉		
(〒경기 <mark>고용보험위원회</mark> 위촉위원 중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정답) <mark>×</mark>

P.13 22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		
〈기존〉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수정〉 <mark>고용보험위원회</mark>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P.13 23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 〈기존〉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 직무를 대행한다.		ユ)
〈수정〉 <mark>고용보험위원회</mark> 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하는 (위)
P.14 24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 〈기존〉		
	()
〈수정〉 <mark>고용보험위원회</mark> 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결한	다.
P.14 25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		
〈기존〉 위원회에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를 둔다.	()
〈수정〉 <mark>고용보험위원회</mark> 에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를 둔다.	()
P.18 10번 문제 해설/정답 내용수정 〈기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모도의 다음 연도부터 <mark>3년</mark> 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고보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생한 정답	
〈수정〉 <mark>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mark> 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mark>5년</mark> 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고보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u>'</u> - 그	사

2

P.21 12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

〈기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수정〉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P.26 40번 문제 해설 내용수정

〈기존〉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mark>이직일</mark>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수정〉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mark>이직일의 다음날</mark>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P.29 03번 문제 삭제

03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보험자는 이직 또는 취업을 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이직 또는 취업을 한 사실을 적어야 한다(고보법 시행령 제96조).

정답

P.45 07번 문제 지문 ④ 내용수정

〈기존〉

④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mark>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mark>

〈수정〉

④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mark>전문인력을</mark> 고용하는 경우

P.50 06번 문제 지문 ② 내용수정

〈기존〉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수정〉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수정〉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P.62 01번 문제 지문 ③ 내용수정 〈기존〉 ③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 실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정〉 ③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하지 아니하다. P.74 01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 〈기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수정〉 <mark>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mark>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P.74 02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 〈기존〉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수정〉 <mark>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mark>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P.75 07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 〈기존〉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한다. () 〈수정〉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중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 하는 사람 5명으로 한다. () P.75 08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 〈기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mark>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mark>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P.77 12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		
〈기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수정〉 <mark>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mark>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P.78 13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		
〈기존〉 위원장과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수정〉 <mark>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mark> 위원장과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P.78 14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		
〈기존〉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수정〉 <mark>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mark>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P.84 30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		
〈기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mark>손자녀 또는 형제자매</mark> 가 19세가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
〈수정〉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mark>형제자매</mark> 가 19세가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
P.117 15번 문제 지문 ③ 내용수정		
〈기존〉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mark>손자녀 또는 형제자매</mark> 가 19세가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	다.
〈수정〉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mark>형제자매</mark> 가 19세가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P.131 37번 문제 정답 내용수정		

5

해설/정답 ⑤ → ③

P.152 47번 문제 지문/해설 내용수정

〈기존〉

사업주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mark>사업주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mark>. ()

건강보험공단은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취소통지서를 사업주에 게 보내야 한다(징수법 제32조의5).

〈수정〉

사업주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승인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분할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사업주는 분할납부승인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징수법 시행규칙 제 32조의3 제1항).

P.153 48번 문제 해설 내용수정

〈기존〉

분할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사업주는 분할납부승인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징수법 시행령 제32 조의2 제1항).

〈수정〉

건강보험공단은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체납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취소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징수법시행규칙제32조의5).

P.164 01번 문제 문제/정답 내용수정

〈기존〉

0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mark>일할계산</mark>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

해설/정답 5

〈수정〉

0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mark>다음달부터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사유</mark>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

해설/정답 ③

P.177 23번 문제 지문 ② 내용수정

〈기존〉

② 사업주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

② 사업주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mark>분할납부승인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mark>.

P.177 23번 문제 해설 ②,③ 내용수정

〈기존〉

- ② 건강보험공단은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취소통 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징수법 제32조의5).
- ③ 분할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사업주는 분할납부승인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징수법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

〈수정〉

- ② 분할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사업주는 분할납부승인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징수법시행규칙제32조의3제1항).
- ③ 건강보험공단은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체납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취소통 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징수법 시행규칙 제32조의5).

P.202 03번 문제 지문 ② 내용수정

〈기존〉

②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수정〉

②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P.212 20번 문제 정답/해설 ③ 내용수정

〈기존〉

해설/정답 5

③ 사기법 제20조 제4항

〈수정〉

해설/정답 3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 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사기법제21조제1항).

P.228 01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 〈기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 <mark>여행</mark> 중인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는 정지한다. () 〈수정〉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 <mark>체류</mark> 중인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는 정지한다. () P.229 08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 〈기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 하다. () 〈수정〉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P.232 23번 문제 해설 내용수정 〈기존〉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건강법 제87조 제2항). 〈수정〉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mark>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건강법 제87조 제2항</mark> 및 제3항). P.233 29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 〈기존〉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100분의 50을 곱하여 얻은 금액과 소득월액에 보 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 〈수정〉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에 <mark>보험료율을</mark> 곱하여 얻은 금액과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 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 P.235 01번 문제 지문 ① 내용수정 〈기존〉 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 여행 중인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는 정지 하다. 〈수정〉 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 체류 중인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는 정지

하다.

P.236 03번 문제 지문 ③ 내용수정

〈기존〉

③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수정〉

③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서 <mark>체류하고</mark> 있는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 를 하지 아니한다.

P.239 08번 문제 지문 ⑤ 내용수정

〈기존〉

⑤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

〈수정〉

⑤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

P.240 10번 문제 해설 ③,④ 내용수정

〈기존〉

③, ④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건강법 제87조 제2항).

〈수정〉

③, ④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mark>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 청을 할 수 있다(건강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mark>.

P.241 11번 문제 지문 ④ 내용수정

〈기존〉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에 <mark>보험료율 100분의 50을</mark> 곱하여 얻은 금액과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수정〉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에 <mark>보험료율을</mark> 곱하여 얻은 금액과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P.242 14번 문제 지문 ② 내용수정

〈기존〉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수정〉

②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

P.243 16번 문제 지문 ③ 내용수정

〈기존〉

③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수정〉

③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P.251 30번 문제 정답/해설 내용수정

〈기존〉

해설/정답 5

건강법 시행규칙 제51조

- 1.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 2. 연체금의 금액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3.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폐쇄 또는 폐교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 4.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정〉

해설/정답 4

건강법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 4. 적용대상사업장에 제7조 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P.264 04번 문제 지문 ③ 내용수정

〈기존〉

③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60세가 된 때는 사업장가입자, <mark>직장 가입자</mark>의 공통된 자격상실 사유이다.

〈수정〉

③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60세가 된 때는 사업장가입자, <mark>지역</mark> <mark>가입자</mark>의 공통된 자격상실 사유이다.